

청주지방법원 2021. 10. 22 선고 2021나526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청주지방법원 2021. 10. 22 선고 2021나52635 판결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. 4. 2 선고 2020가단455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이정

담당변호사 이하윤, 조희연, 안지선, 김윤우, 양지인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1. 10. 1.

판결선고 2021. 10. 22.

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. 4. 2. 선고 2020가단4552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충북 옥천군 C 전 1,537㎡에 관하여,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과 피고 사이에 2019. 7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D에게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9. 7. 24. 접수 제9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,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다르지 않고,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)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임병렬, 판사 김환권, 판사 전보람